3. 기타승강시설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거나 주차할 장소로 운반 또는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옥내에 설치한 시설

2. 종 류

가. 수직순환식주차장치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나. 수평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다. 다층순환식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라. 2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마. 다단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바. 승강기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사. 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장치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아래·위 및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아. 평면왕복식주차장치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자. 특수형식주차장치

제가호 내지 제아호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3. 내용년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최종년도 잔가율	감 가 율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준가격표(1대당 기준가격)

가.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3,840	3,120
하	3,584	2,800

나. 수평순환식 및 다층순환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2단 이하	3 단	4 단	5 단	6 단
상	3,420	3,192	2,964	2,736	2,560
하	3,116	2,874	2,691	2,517	2,432

다. 2단식(1단식포함)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단 순	경 사	승 강
상	2,640	2,880	3,040
하	2,160	2,480	2,880

라. 다단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3 단	4 단	5단 이상
상	3,160	3,000	2,640
하	2,704	2,555	2,355

마. 승강기식 및 승강기슬라이드식 주차장치

(단위 : 천원/대)

구 분	40대까지 기준가격	40대초과 1대증가시마다 기준가격
상	2,960	2,840
하	2,560	2,440

바. 평면왕복식

(단위 : 천원/대)

구분	2단이하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상	4,560	4,256	4,104	3,872	3,720	3,568	3,344	3,112
하	4,104	3,824	3,720	3,496	3,376	3,224	3,040	2,848

사. 기타 주차장치(특수형식 주차장치포함)

위 종류 이외의 주차시설은 과세권자가 수시 조사 결정한 가격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1대당) × 대수 × 잔가율

≪ 산출예시 ≫

1. 2007년도에 35대의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직순환식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2년의 시가표준액은?(외국산기술제휴제품)
   - 감가율 : 0.05
   - 경과년수 : 5년
   - 기준가격(1대당) : 3,840천원
   - 잔가율 : 1－(0.05×5)＝0.75
   - 시가표준액 : 3,840천원×35대×0.75＝100,800천원

2. 2005년도에 평면왕복식의 8단 300대의 자동차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2년의 시가표준액은?(기타제품)
   - 감가율 : 0.05
   - 경과년수 : 7년
   - 기준가격(1대당) : 3,040천원
   - 잔가율 : 1－(0.05×7)＝0.65
   - 시가표준액 : 3,040천원×300대×0.65＝592,800천원

4. 20KW이상의 발전시설

1. 용 어 정 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급·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제외된다.

2. 내용년수 및 감가율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3.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20kw	12,536	8,400	76	93
	42kw	14,240	10,920	139	105
	48kw	15,232	12,040	106	61
	75kw	18,734	13,720	13	84
	115kw	20,056	18,128	71	85
	145 kw	24,221	20,800	34	72
	275 kw	31,424	30,360	128	96
	300 kw	36,920	32,760	148	145
	365 kw	47,928	42,240	39	191

품 명	규 격	기준가격		1kw증가시 기준가격	
		자 동 식	수 동 식	자 동 식	수 동 식
발 전 기	400 kw	49,312	51,917	99	148
	450 kw	56,368	60,674	110	114
	500 kw	63,712	66,410	158	146
	600 kw	82,294	81,106	186	203
	750 kw	111,200	112,350	136	76
	1,000 kw	145,264	141,440	212	193
	1,250 kw	200,400	190,000	148	145
	1,500 kw	237,760	226,400	198	187

4.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kw당 증가시 기준가격]×잔가율

≪ 산출예시 ≫

○ 자동식발전기(300kw)를 2007년도에 설치한 경우 2012년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5)＝0.7
- 기준가격 : 300kw과표 36,920,000원
- 시가표준액 : 36,920,000원×0.7＝25,844천원

5.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1. 용 어 정 의

난방과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보일러를 말하며, 공장 등에서 제품 생산을 위하여 설치한 보일러는 시설물로 보지 아니한다.

2. 종 류

가. 난방용 보일러

나. 욕탕용 보일러 : 공동탕(대중탕), 가족탕(독탕), 한증막, 증기탕, 사우나탕

3.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난방용보일러	15년	정액법	10%	0.06	
욕탕용보일러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가. 난방용 보일러

(단위 : 원)

냉 · 난 방 방 식 별	㎡ 당 기준가격
직 접 증 기 난 방 설 비	24,799
직 접 온 수 난 방 설 비	24,268
온 풍 난 방 설 비 (온 풍 로 식)	19,143
온 풍 난 방 설 비 (코 일 식)	20,905
냉 · 난 방 (중 앙 닥 트 식)	45,305
냉 · 난 방 (유 니 트 식)	54,975
전 기 온 돌 난 방 설 비	32,542

○ 건물의 용도별·면적별 부과지수표

구분 용도별	건 물 의 시 설 연 면 적 (㎡)									
	330㎡ 이하	660㎡ 이하	990㎡ 이하	1,650㎡ 이하	2,640㎡ 이하	3,300㎡ 이하	6,600㎡ 이하	9,900㎡ 이하	16,500㎡ 이하	16,500㎡ 초과
사 무 실	1.30	1.20	1.10	1.10	0.97	0.95	0.95	0.95	0.90	0.85
은 행	1.35	1.30	1.30	1.10	1.00	1.00	0.97	0.97	0.95	0.90
병 원(종 합)	1.40	1.37	1.37	1.30	1.25	1.25	1.20	1.20	1.00	0.95
병 원(단 과)	1.30	1.27	1.25	1.20	1.10	1.10	1.00	1.00	0.97	0.95
백화점,점포	1.25	1.20	1.10	1.10	1.00	1.00	1.00	0.97	0.95	0.80
호 텔	1.40	1.37	1.30	1.30	1.25	1.20	1.20	1.10	1.00	0.95
여 관	1.30	1.25	1.20	1.10	1.05	1.00	1.00	1.00	1,00	1.00
다 방 , 식 당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공 장 평 균	1.30	1.20	1.00	1.00	0.95	0.90	0.80	0.80	0.75	0.75
제 과 점	1.40	1.35	1.30	1.25	1.00	1.00	1.00	1.00	1.00	1.00
방 송 국	2.00	1.80	1.70	1.60	1.60	1.60	1.50	1.50	1.40	1.20
극 장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학 교	1.30	1.20	1.05	1.00	1.00	0.95	0.95	0.85	0.80	0.80
연 구 소	1.30	1.25	1.20	1.15	1.10	1.00	1.00	0.95	0.90	0.90
예 식 장	1.30	1.20	1.10	1.00	0.97	0.95	0.95	0.95	0.95	0.95
별 장	1.30	1.25	1.2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체 육 관	1.40	1.35	1.30	1.25	1.20	1.00	1.00	1.00	0.90	0.90
동(식)물온실	1.40	1.35	1.30	1.25	1.20	1.10	1.00	1.00	0.90	0.90

나. 욕탕용 보일러

(단위 : 천원)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방 식 별	㎡당 기준가격
공 동 탕	49	증 기 탕	64
한 증 막	49	사 우 나 탕	70
가 족 탕	61		

○ 면적별 부과지수표

연 면 적	165㎡ 이하	330㎡ 이하	660㎡ 이하	990㎡ 이하	990㎡ 초과
지 수	1.20	1.00	0.95	0.90	0.80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부과지수×잔가율

≪ 산출예시 1 ≫

○ 2006년도에 연면적 1,000㎡의 호텔을 신축하였다. 당 호텔의 난방은 중앙닥트의 냉·난방시설이다. 2012년도 냉·난방시설의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경과년수 5년 : 0.06×6년＝0.36 따라서 잔가율은 1－0.36＝0.64
- 1,000㎡ 기준가격 : 45,305원×1,000㎡＝45,305,000원
- 부과지수 적용 : 45,305,000원×1.30(부과지수)＝58,896,000원
- 시가표준액 : 58,896,000원×0.64＝37,693천원

≪ 산출예시 2 ≫

○ 연건평 660㎡의 대중목욕탕이 2006년도에 신축되었고 660㎡ 중 330㎡은 잡화상점으로 임대되고 실제 대중목욕탕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30㎡이다. 2012년 욕탕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6)＝0.64
- 대중탕 기준가격(㎡당 49,000원) : 330㎡×49,000원＝16,170,000원
- 부과지수 적용 : 16,170,000원×1.00(부과지수)＝16,170,000원
- 시가표준액 : 16,170,000원×0.64＝10,348천원

6. 7,560㎉급 이상의 에어컨

1. 용 어 정 의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는 7,560kcal (2.5R/T) 이상의 에어컨으로서 중앙조절식에 한하여 시설물로 인정한다.

2. 종 류

1) 중앙집중식 에어컨에 한하며 1실단위의 에어컨은 제외한다.
2) 제품의 구분 : 공냉식, 수냉식

3. 내용년수 및 감가율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5년	정액법	10%	0.06	

4.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3R/T 9,072kcal (1R/T 증가시)	1,072(84)	2,104(228)	
5R/T 15,120kcal (1R/T 증가시)	1,240(193)	2,560(300)	
7.5R/T 22,680kcal (1R/T 증가시)	1,725(205)	3,312(280)	
10R/T 30,240kcal (1R/T 증가시)	2,240(304)	4,200(230)	
15R/T 45,360kcal (1R/T 증가시)	3,762(74)	5,352(207)	

(단위 : 천원)

종 류 구 분	기 준 가 격		비고
	공 냉 식	수 냉 식	
20R/T 60,480kcal (1R/T 증가시)	4,136(1,013)	6,389(787)	
25R/T 75,600kcal (1R/T 증가시)	14,550(448)	12,376(120)	
40R/T 120,960kcal (1R/T 증가시)	22,528(105)	14,192(91)	
50R/T 151,200kcal (1R/T 증가시)	24,640(281)	16,016(368)	
60R/T 181,440kcal (1R/T 증가시)	27,456(551)	20,016(501)	
80R/T 241,920kcal (1R/T 증가시)	44,000(493)	31,224(412)	
100R/T 302,400kcal (1R/T 증가시)	54,475(344)	40,396(262)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1R/T 증가시 기준가격]×잔가율

≪ 산출예시 ≫

○ 2010년도에 6R/T 18,144kcal의 <u>공냉식</u>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경우 2012년 시가표준액은?

- 잔가율 : 1－(0.06×2)＝0.88
- 5R/T 15,120kcal 기준가격 : 1,240,000원
- 1R/T 3,024kcal 증가시 기준가격 : 193,000원
- 기준가격 합계 : 1,240,000＋193,000＝1,433,000원
- 시가표준액 : 1,433,000원×0.88＝1,261천원

7. 부착된 금고

1. 용 어 정 의

부착된 금고라 함은 건물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으로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하며 은행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 종　　류

1) 편개형 : 금고문이 1짝인 경우

2) 양개형 : 금고문이 2짝인 경우

3) 크랭크형 : 금고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음

3. 내용년수 및 감가율

내 용 년 수	감 가 방 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18년	정 액 법	10%	0.05	

4. 기 준 가 격 표

(단위 : 천원)

규 격		편개형 후면 철판부	편개형 후면 유리부	양개형 후면 철판부	양개형 후면 유리부	크랭크형후면 철판부	크랭크형후면 유리부	크랭크형스테인레스	스텐전동식슬라이딩	스텐 편개형
750 千㎤	기준과표	2,501	2,826	1,844	2,060	3,484	3,884	5,574	5,947	5,086
	10千㎤ 증감과표	7.2	7.2	6.4	2	2.4	1.2	7.2		
875 千㎤ 이상	기준과표	3,624	4,187	2,086	2,340	3,776	4,089	6,563	6,777	5,967
	10千㎤ 증가과표	3.2	4	1.6	4	2.2	3	5.2		
1,000 千㎤ 이상	기준과표	4,164	4,412	2,305	2,524	4,080	4,569	7,291	7,700	6,782
	10千㎤ 증가과표	3.2	4	1.4	3	3	3	1.7		
1,085 千㎤ 이상	기준과표	4,480	5,060	2,472	2,894	4,368	4,915	7,496	8,347	7,359
	10千㎤ 증가과표	3.2	4	4	4	5.6	2.7	3.2		
1,170 千㎤ 이상	기준과표	4,856	5,452	3,556	3,463	4,942	5,244	7,590	9,014	7,936
	10千㎤ 증가과표	1.6	1.6	1.6	1.6	1.6	1.6	1.6		

5. 조 사 방 법

가. 금고문의 폭, 넓이, 두께를 조사하여 규격을 결정하고 문이 1짝일 경우 편개형, 2짝일 경우 양개형으로 구분

나. 문이 열렸을 때 문뒷면이 유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리부, 철판이 부착되어 있으면 철판부

다. 크랭크형은 전부 문이 1짝이며 손잡이가 원형크랭크로 되어 있고 크랭크형 스테인레스는 금고 전체가 스테인레스로 제작된 것임

6.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증감시 기준가격]×잔가율

≪ 산출예시 ≫

○ 2008년도에 설치된 금고문의 폭 1,800㎜, 높이 2,100㎜, 두께 300㎜의 편개형 후면철판부 금고의 2012년 시가표준액은?

- 잔 가 율 : 1－(0.05×4)＝0.8
- 규　　격 : 1,800×2,100×300＝1,134千㎤
- 1,085千㎤ 기준가격＝4,480,000원
- 10千㎤ 증가시 기준가격 : 3,200원
- 기준가격 합계 : 1,134千㎤－1,085千㎤＝49千㎤≒50千㎤
  ⇒ 4,480,000＋(5×3,200)＝4,496,000원
- 시가표준액 : 4,496,000×0.8＝3,596천원

8. 교 환 시 설

1. 용 어 정 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

2. 종 류

자동식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교환설비

3. 내용년수 및 잔가율

종류별 \ 구분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 고
자 동 식 교 환 기	10년	정 액 법	10%	0.09	
인 터 폰	5년	〃	10%	0.18	
전 화 기	5년	〃	10%	0.18	
간 이 교 환 설 비	10년	〃	10%	0.09	

4. 기 준 가 격 표

가. 자동식 교환기

(제조회사 : 삼성반도체통신, 금성통신, 대우통신, 동양정밀, 대한통신 등)

(단위 : 천원)

규격별	기준가격	사선1회선 증감시 기준가격		비 고
		1회선감소시	1회선증가시	
50회선	11,843	208	236	

나. 인 터 폰

(단위 : 천원)

형 식 별	규 격	기준가격
	6 회 선	28
상 호 식	10 회 선	41
	12 회 선	47
	18 회 선	51
연 립 식	24 회 선	56
	12 회 선	51
연 립 비 화 식	18 회 선	62
	24 회 선	66
	10 회 선	48
모 자 식	가선식(加線式)	46
	6 회 선	18
	20 회 선	51
	30 회 선	56
전 자 식	90 회 선	61

다. 전 화 기

(단위 : 천원)

형 식 별	기 준 가 격	비 고
공 전 식	18	
일 반 자 동 식	34	
일 반 버 튼 식	21	
자 동 응 답 기	62	
무 선 전 화 기	81	

라. 간이교환설비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교환원 없이 통화할 수 있는 교환설비(키폰, 비지네스폰, 버튼 전화기)를 말하며, 구내선수가 40회선 이하이어야 한다.

(단위 : 천원)

형태별	품 명	규격(용량) 국 선	규격(용량) 사 선	기준가격 주 장 치	기준가격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DCS-828	0	8	658	
	IPLDK-50	4	12	684	
	IPLDK-100	0	0	1,155	
	IPLDK-300	0	0	1,584	
	IPLDK-600	0	0	2,890	
	LDK-50	4	12	568	
	LDK-50	8	12	568	
	LDK-100	0	0	640	
	LDK-300	0	0	920	
	LDK-828	4	8	576	
	SKP 308	3	8	353	
	SKP 616	6	16	438	
	SKP 816	8	16	413	
	SKP 828	4	12	535	
	SKP 1640	16	40	2,116	
	SKP 48H-M	4	10	574	
	SKP 60H-M	4	13	598	
	SKP 820VMA	2(ISDN)	20	1,009	
	SKP - 180	0	0	1,113	
	SKP - 408	4	8	383	
	HKP 206	2	6	127	15.2
	OfficeServ 7400	0	0	2,600	37.6
	OfficeServ 7200	0	0	940	37.6
	OfficeServ 7070	4	12	692	22.4
	OfficeServ 7030	0	2	344	22.4
	IDCS 500P	0	0	679	44.8
	DCS-816i	4	4	551	26.4
	DCS-828	0	12	658	36
	IPLDK-828E	4	12	701	
	IPLDK-60	3	8	498	
	HTKP-616	4	8	552	17.6

(단위 : 천원)

형태별	품 명	규격(용량) 국 선	규격(용량) 사 선	기준가격 주 장 치	기준가격 사선1회선당 (사용량)
신 형	HTKP-820V	4	10	456	35.2
	HTKP-824	4	12	472	28.8
	HTKP-48HD	4	16	648	35.2
	HTKP-66D	6	18	776	35.2
	HTA-500			1,189	17.6
	IPECS-100		신규	1,452	
	IPECS-300		신규	3,960	
	IPECS-600		신규	5,280	
	IPECS-MG10		신규	1,320	
	IPECS-MG30		신규	3,300	

※ 주장치(Control Box)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경우에 한함.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가. 자동식 교환기 산출방법

시가표준액＝{기준가격(50회선)＋(1회선증감시 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1－(감가율×사용년수)

나. 인터폰 산출방법

시가표준액＝(1대당기준가격×수량)×잔가율

※ 잔가율＝1－(감가율×사용년수)

다. 전화기 산출 방법

시가표준액=(1대당기준가격×수량)×잔가율

※ 잔가율=1-(감가율×사용년수)

라. 간이교환시설 산출 방법

시가표준액={주장치 기준가격+(사선1회선당(사용량)기준가격×회선수)}×잔가율

※ 잔가율 : 1-(감가율×사용년수)

≪ 산출예시 1 ≫

○ 2005년 설치한 HKP 206형 교환설비의 2012년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국선 2, 사선 8 임.

- 감가율 : 0.09
- 잔가율 : 1-(0.09×7)=0.37
- 주장치 기준가격 : 127,000원 ……………………………………………… A
- 사선증가시 기준가격 : 15,200원×2회선=30,400원 ……………… B
- 기준가격 합계 : A+B=127,000+30,400=157,400원
- 시가표준액 : 157,000원×0.37=58천원

9.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1. 용 어 정 의

구내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울타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데, 생산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것과 한국전력공사가 울타리 외에 설치한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시설은 시설물이 아님.

2. 종 류

가. 구내 변전시설

수용가구내 설치된 변압기를 말한다.(용량, 규격별 산정)

나. 배전시설

한국전력공사 재산인 전주에서 수용가구내에 설치한 변압기까지이며 단, 수전용량(계약용량)100KVA이상 수용가에 적용한다.

3. 조 사 방 법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전기요금 납입영수증에 기재된 계약용량을 조사 확인

4.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내용년수	감가방법	잔 존 율	감 가 율	비고
구 내 변 전 시 설	15년	정액법	10%	0.06	
배 전 시 설	15년	〃	10%	0.06	

5. 기 준 가 격 표

가. 구내 변전시설

(단위 : 천원)

품 목	규 격 별	기준가격		1KVA증가시 기준가격		비고
		단 상	삼 상	단 상	삼 상	
변 압 기	50 KVA	2,272	3,586	12	4	
	100 KVA	3,758	5,632	17	19.2	
	150 KVA	4,616	6,928	8.8	13.2	
	200 KVA	5,216	7,616	5.6	16	
	250 KVA	5,504	8,440	7.2	8.8	
	300 KVA	5,880	8,904	4.8	8	
	350 KVA	6,136	9,312	13.7	14.4	
	400 KVA	7,160	10,064	12	12.8	
	500 KVA	8,416	11,392	12.8	15.7	
	600 KVA	9,704	13,416	10.2	9.6	
	750 KVA	11,280	14,928	8	11.2	
	1,000 KVA	13,464	17,864	6.4	13.6	
	1,500 KVA	16,824	24,704	7.2	6.4	
	2,000 KVA	20,792	28,056	6.4	11.8	
	2,500 KVA	24,024	39,568	6.4	8	
	3,000 KVA	27,552	43,784	8.8	12.8	
	4,000 KVA	36,936	58,295	4	7.2	
	5,000 KVA	41,656	71,360	7.2	15.6	
	6,000 KVA	49,032	87,115	4.8	3.2	
	7,500 KVA		104,347		11.2	

나. 배전시설

(단위 : 천원)

품 목 별	시 설 별	기준가격	비고
배전시설공통적용	500KW이하 (50KVA 기준) 1 KVA 증가시 마다	9,320 37.6	
	500KW초과 (500KVA 기준) 1 KVA 초과마다	20,840 29.6	

※ W=전압(V)×전류(A)

6. 산 출 방 법

가. 구내 변전시설

시가표준액={기준가격+(1 KVA증가시 기준가격×증가수량)}×잔가율

※ 잔가율=1−(감가율×년수)

나. 배전시설

시가표준액={시설별기준가격+(1KVA증감시 기준가격×증감수량)}×잔가율

≪ 산출예시 ≫

○ 2005년 시설한 구내변전시설의 경우 2012년의 시가표준액은?
단, 규격은 170 KVA, 단상임.

- 감가율 : 0.06
- 잔가율 : 1−(0.06×7년)=0.58
- 150 KVA(단상)기준가격=4,616천원 ………………………………………… A
- 1 KVA당 증가시 기준가격 8,800×20KVA=176천원 ………… B
- 기준가격 합계 : A+B=4,616,000+176,000=4,792,000원
- 시가표준액 : 4,792,000원×0.58=2,779천원

Ⅶ. 입 목

1. 용 어 정 의

1)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을 말한다.

2) 지상의 과수라 함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3) 입목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4) 죽목이라 함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재적(材積) :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 직경 : 입목 상태에서 120㎝(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고(樹高) : 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 : 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 : 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장(材長) : 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 : 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山林經營技術者) :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營林計劃書) : 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林地境界] : 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기설차도[旣設車道] :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 :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 :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律] : 1-(소득/조수입×100)

3. 종 류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4. 시가 조사방법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2) 산림목은 ㎥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산림목

가. 재적(㎥)이 나타난 경우

시가표준액 = 재적 × ㎥당 단가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2) ㎥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나. 재적(㎥)을 직접 조사할 경우

시가표준액 = 간재적 × 본수 ×㎥당 단가

1) 총재적 : 간재적 × 본수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 유실수

가.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현실화율

나.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전년 시가표준액 × 현물가상승률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산림목

≪재적(㎥)이 나타난 경우≫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부위에서 2㎝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견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견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2) ㎥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산림목 시가표준액표(㎥당)

(단위 : 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51,600	21,200	25,520	13,280	10,320

나. 유실수

1)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평가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16종의 유실수 중 11종은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으나, 그 외 5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전년대비 2011.7월 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유실수 시가표준액표(본당)

(단위 : 원)

수령별 /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7,660	17,030	41,530	57,320	63,070	33,180
배	8,250	35,020	65,090	70,000	62,820	40,270
복숭아	10,720	50,580	56,770	31,920	4,310	-
포도	14,210	37,870	23,590	11,200	-	-
감귤	4,470	5,500	10,100	12,820	12,630	7,850
단감	7,180	11,180	26,750	36,350	28,070	12,110
유자	5,050	37,720	45,530	30,340	12,990	-
참다래	15,040	43,070	54,530	62,970	58,210	20,440
자두	5,590	11,260	15,420	15,700	8,650	5,420
매실	4,650	9,770	13,680	14,380	10,350	4,550
호도	3,440	6,530	8,880	13,450	16,190	13,330
앵두	2,640	5,280	7,450	8,080	12,090	8,470
대추	4,140	5,450	9,010	12,630	9,640	7,580
살구	2,570	4,980	7,450	9,050	11,190	8,240
모과	900	2,000	3,580	6,320	6,450	5,500
밤	2,580	4,210	7,020	9,630	9,380	7,560

≪첨부자료≫

■ 산림목

≪시장가역산법≫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x = f \times \left(\frac{a}{(1 + mp + r)} - b \right)$$

x :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재적당 생산비 〔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1) 조재율(f)

조재율(이용율)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재적의 입목간재적에 대한 비율입.

[표1] 수종별 조재율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5%	79%	88%	83%	75%

*국유림관리소 16개소의 평균자료

(2)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a)

산림청 발간 임업통계연보(2011.09)상 임산물가격동향, 각지방청 임산물시가조사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181,000원/㎥	122,000원/㎥	128,000원/㎥	108,000원/㎥	102,000원/㎥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미만	0.5월	1월
300㎥ ~ 500㎥	1월	2월
500㎥ ~ 1,000㎥	2월	3월
1,000㎥ ~ 2,000㎥	3월	4월
2,000㎥ ~ 3,000㎥	4월	5월
3,000㎥ ~ 5,000㎥	5월	6월
5,000㎥ 이상	5월	6월

(4) 월 이율(p)

금융기관 일반자금대출최저금리를 기준하여 연5.5% 적용함.

이율	월	적용
5.5%	12	0.00458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률,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15% 적용함.

(6) 단위재적당 생산비(b)

가. 벌목조재비

(가) 인건비

공사부분시중노임단가 중 벌목부임(벌목조재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벌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90,524/일	72,415/일	162,939/일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40,000	0.0084	7,056/일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류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2,007	2.3	5,000	22,742/일

(라) 벌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162,939	162,939	162,939	162,939	162,939
기계톱경비	7,056	7,056	7,056	7,056	7,056
유류대	22,742	22,742	22,742	22,742	22,742
합계	192,737	192,737	192,737	192,737	192,737
작업물량 (㎥/일)	11.90	16.59	13.73	8.97	11.32
벌목조재비 (원/㎥)	16,196	11,618	14,038	21,487	17,026

나. 산지집재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 · 일)	72,415	72,415	72,415	72,415	72,415
산지집재 작업물량 (㎥/인 · 일)	3.3	3.4	3.4	3.4	3.3
산지집재비 (원/㎥)	21,944	21,299	21,299	21,299	21,944

다. 운반비

(가) 상차비

포크레인(Wood Crab) 하루 임대료(\450,000)에 1일 포크레인 작업물량(75㎥)으로 나누어 계산함

포크레인 사용료(원/일)	작업량(㎥/일)	금액(원/㎥)
450,000	75	6,000

(나) 소운반비

트럭 하루 임대료(\450,000)에 1일 운반물량(75㎥)으로 나누어 계산함

트럭 사용료(원/일)	작업량(㎥/일)	금액(원/㎥)
450,000	75	6,000

(다) 대운반비

11톤 트럭 운임에 수종별 중량, 적재량, 운송거리, 시중 운임비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차량운반비 (원/11톤1일)	380,000	380,000	380,000	380,000
적재량 (㎥/11톤1일)	14	16	24	22
운반비 (원/㎥)	27,100	24,200	15,800	17,3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3%를 적용함.

마. 단위재적당 생산비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벌출비	벌목조재비	16,196	11,618	14,038	21,487	17,026
	산지집재비	21,944	21,299	21,299	21,299	21,944
	소계	38,140	32,917	35,337	42,786	38,970
운반비	상차비	6,000	6,000	6,000	6,000	6,000
	소운반비	6,000	6,000	6,000	6,000	6,000
	대운반비	27,100	24,200	24,200	15,800	17,300
	소계	39,100	36,200	36,200	27,800	29,300
소 계		77,240	69,117	71,537	70,586	68,270
기타비용(3%)		2,317	2,073	2,146	2,117	2,048
합 계		79,557	71,190	73,683	72,703	70,318

(7)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수확량 및 판매량

2007년 농협 재해보험팀 용역보고서,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05.09월)을 기준하여 10a당 수확량에 상품화율을 적용하여 판매량 결정.

(kg/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126	1,529	858	1,100	475	436
10년생	2,888	2,786	1,964	1,325	2,225	1,582
15년생	3,743	3,672	1,914	1,100	3,050	2,202
20년생	4,027	3,790	1,436	950	3,563	2,398
30년생	3,626	3,438	1,188	-	3,400	2,062
40년생	2,833	2,685	-	-	2,675	1,641

* 복숭아는 25년생까지

2.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년생별 조수입을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341,033	1,889,174	1,637,576	4,124,083	373,251	510,636
10년생	3,439,525	3,442,275	3,748,484	4,967,646	1,748,385	1,852,813
15년생	4,457,805	4,536,983	3,653,054	4,124,083	2,396,663	2,578,947
20년생	4,796,041	4,682,779	2,740,745	3,561,708	2,799,774	2,808,499
30년생	4,318,461	4,247,861	2,267,413	-	2,671,690	2,414,981
40년생	3,374,021	3,317,483	-	-	2,101,991	1,921,913

3. 생산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상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에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자가임차료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함.

(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5년생	1,910,684	2,326,330	2,068,667	3,193,789	1,226,393	1,299,025
10년생	2,720,008	3,069,814	3,023,927	3,804,853	1,748,010	1,847,542
15년생	3,190,357	3,649,732	3,085,682	3,516,259	2,046,682	2,190,109
20년생	3,447,305	3,853,196	2,300,061	2,851,038	2,230,224	2,366,663
30년생	3,327,600	3,698,007	2,162,382	-	2,190,938	2,235,105
40년생	2,525,834	2,803,649	-	-	1,625,343	1,724,973

4. 가격결정

유령수는 상기의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상기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산정된 10a당 수익가격을 재식주수로 나누어 주당 가격을 산정함

Ⅷ. 어 업 권

1. 용 어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어업권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말한다.

2. 종 류

가.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낙망류, 승망류, 죽방렴,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 등)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 등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 양식어업 : 2)~4) 및 6)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마을 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7) 협동 양식어업 : 마을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를 초과한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2)~5)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협동하여 양식하는 어업

8) 외해 양식어업 :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나.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

1) 양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 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 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 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3. 시 가 표 준 액

○ 어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조사가격	=	인근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양식물의 종폐 및 치어대
결정가액	=	조사가격	×	0.7		

○ 인근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

- 시장·군수가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어장의 지역별·종별·양식방법별 형성가격을 조사한 가격

○ 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거 시·군에서 조사한 동종어장의 1ha당 어구값의 시장(市場)가격

- ha당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시장조사 어구값

$$\text{당해어장의 어구설치비} = \text{동종어장의 시장조사 시설별 어구값의 합계액} \times \frac{(\text{면허기간}+\text{연장기간})-\text{경과년수}}{\text{면허기간}+\text{연장기간}}$$

- 어구시설이 없는 어장의 경우는 어구설치비 제외

○ 양식물의 종패 및 치어대

-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서(별표참조)에 의한 동종어장의 1ha당 표준종패 및 치어대의 시장조사가격

- 1ha당 가격×당해어장면적=당해어장의 양식물 종패 및 치어대

- 양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음

어업권면허 유효기간

구 분	어업의 종류	시 설 별	유효기간	비 고
수산어업	양 식 어 업	살 포 식	10년	
		투 석 식	〃	
		건 홍 식	〃	
		수 하 식	〃	
		가 두 리	〃	
		축 제 식	〃	
	정 치 망 어 업		〃	
내수면어업	양 식 어 업		〃	
	정 치 망 어 업		5년	
	조 류 채 취 어 업		〃	
	공 동 어 업		〃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1)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2)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를 적용한 가격을 기준가액으로 한다.

〈산출예시〉

○ 취득물건
 ·어장명 : 굴 수하식 ·면적 : 10ha ·면허취득일 : 2004. 5. 1.

○ 취득일시 : 2010. 2. 25. ○ 취득가격 : 60,000,000원

○ 동종어장의 매매실례가격조사 결정액 : 1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시설어구비 시장조사액 : 10,000,000원

○ 동종어장의 종패대 시장조사액 : 9,000,000원

○ 동종어장의 어구설치비

$$10,000,000\text{원} \times \frac{(10\text{년}+10\text{년})-6\text{년}}{10\text{년}+10\text{년}} = 7,000,000\text{원}$$

○ 조사가격
 94,000,000원 = 110,000,000원 − 7,000,000원 − 9,000,000원

○ 결정가액
 65,800,000원 = 94,000,000원(조사가격) × 0.7

※ 결정과표 산출액의 1,000원미만 버림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목차

일련번호	양 식 품 종	양 식 방 법	시설기준 면 적	비 고
1	숭 어	축 제 식 (조 방 양 식)	1ha	
2	조 피 볼 락	해 상 가 두 리	1ha	
3	넙 치	육 상 수 조 식	500㎡	
4	넙 치	해 상 가 두 리 식	1ha	
5	농 어 / 돔	해 상 가 두 리 식	1ha	
6	대 하	축 제 식	1ha	
7	꽃 게	축 제 식	1ha	
8	굴	연 승 수 하 식	1ha	
9	굴	투 석 식 (간 석 지)	10ha	
10	지 중 해 담 치	연 승 수 하 식	1ha	
11	피 조 개	연 승 수 하 식	1ha	
12	새 꼬 막	연 승 수 하 식	1ha	
13	꼬 막	연 승 수 하 식	1ha	
14	바 지 락	연 승 수 하 식	1ha	
15	동 죽	살 포 식 (간 석 지)	1ha	
16	가 무 라 조 개	살 포 식 (간 석 지)	1ha	
17	백 합	살 포 식 (간 석 지)	1ha	
18	진 주 조 개	연 승 수 하 식	1ha	
19	큰 가 리 비	연 승 채 롱 수 하 식	1ha	
20	전 복	천 해 투 석 식	1ha	

일련번호	양식 품종	양식 방법	시설기준 면적	비 고
21	소 라	천 해 투 석 식	1ha	
22	김	건 홍 식 (부 류 식 망 홍)	1ha	
23	미 역	건 홍 식 (부 류 식 망 홍)	1ha	
24	톳	연 승 수 하 식	1ha	
25	파 래	건 홍 식 (부 류 식)	1ha	
26	우 렁 쉥 이	연 승 수 하 식	1ha	
27	갯 지 렁 이	축 제 식	10ha	
28	김 과 바 지 락	건홍식(지주망홍) 살 포 식 (간 석 지)	1ha	
29	김 과 동 죽	건홍식(지주망홍) 살 포 식 (간 석 지)	1ha	
30	미역과 우렁쉥이	연 승 수 하 식	1ha	
31	다시마와 우렁쉥이	연 승 수 하 식	1ha	
32	다시마와 전복	연 승 수 하 식 천 해 투 석 식	1ha	
33	톳 과 전 복	연 승 수 하 식 천 해 투 석 식	1ha	
34	다시마와 전복	연 승 수 하 식	1ha	
35	톳 과 전 복	연 승 수 하 식	1ha	

※ 시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을 참조하여 시·군·구별로 절차에 따라 조사 결정함

양식 품종별 표준시설 내역

1. 축제식 조방양식(숭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숭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방조제 성토		㎡	100,000		
방조제 돌붙임		㎡	4,000		
방조제 사석		㎡	5,000		
주, 배수문	ø1000㎜×15	개소	2		
관리사	콘크리트블럭 건물	평	100		
사료	배합사료	kg	20,000		
약품	포르마린 등	ℓ	200		
관리선	소형 전마선	대	1		
관리인	남	명	3		
기술자	양식기사	명	1		
계					

2. 해상가두리(조피블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조피볼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부 자	스티로폴 (400ℓ)	개	240			수심 10m 기준
목 재	각목 (10㎝×12㎝×6m)	개	160			
그 물	나이론 38합사 8절	필	6			
그 물	나이론 15합사 12절	필	6			
그 물	나이론 9합사 20절	필	6			
부자결착줄	PP사ø8㎜	m	1,000			
닻	철재 75kg	개	34			
닻 줄	PPø22㎜	m	1,020			
힘줄 로프	PE사 ø8㎜	m	800			
볼트, 넛트	22㎝×4부	개	640			
관리사 및 작업대	5×5m	조	12			
관 리 선	선외기 (0.5톤)	척	1			
시설제작인부	특수인부	명	180			
계						

3. 육상수조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500㎡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1. 수조 시설					
수조 (사각)	6×6×1m	조	10		
2. 하우스 시설					
골 격	철제 1.5m	본	50		
아연 Pipe	1m	본	20		
아연 Pipe	7m	본	500		
보온 덮개	4×25m	환	25		
3. 주배수 시설					
PVC Pipe	ø100㎜	본	50		
PVC Pipe	ø75㎜	본	10		
PVC Pipe	ø50㎜	본	20		
PVC Pipe	ø25㎜	본	20		
PVC 엘보	ø100㎜	개	30		
PVC 엘보	ø50㎜	개	20		
PVC 엘보	ø25㎜	개	20		
PVC 연결봉	ø100㎜	개	20		
PVC 연결봉	ø50㎜	개	20		
PVC 연결봉	ø25㎜	개	10		
PVC 볼밸브	ø50㎜	개	20		
PVC 볼밸브	ø25㎜	개	20		
4. 여과 시설					
배수침전실	7.5평	동	1		
5. 가온 시설	9.9㎡ (3평)				
보일러실	3평	동	1		
보 일 러	40.000㎉	대	1		
엑셀호스	20㎜	개	4		
버 너	70.000㎉	개	1		
6. 사료저장 및 설비	20평	동	1		
건물(조립식)	7.5Hp	대	1		
냉 동 기	우레탄 15am	평	10		
방열시설비	전기식	대	1		
사료분쇄기	전기식	대	1		
배 합 기	전기식	대	1		
초 파 기	14Hp	대	1		
원 동 기					
7. 전기 시설	7평	동	1		
기계, 전기, 펌프실	삼상	50kw	1		
전 력	20kw	개	3		
유상 변압기	10hp	개	2		
모 터	1Hp ø100㎜	개	4		
원 동 기	ø35㎜	환	1		
고압호스	ø100㎜	환	1		
고압호스	5평	동	1		
8. 관 리 사	7.5평	동	1		
9. 창 고	남	명	170		
10. 인 건 비	여	명	60		
계					

4. 해상가두리식(넙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넙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아비동					
부 자	(12cm×15cm×10m)	개	240			
닻	대형 (400ℓ)	개	420			
닻 줄	철제 75kg	개	26			
사 육 망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방오처리망)	모지망 105경	조	5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3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mm	m	2,400			
볼트, 낫트	33cm×6부	개	1,4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40			10×10×3m
저망고정테두리	아연 pipe ø11mm	개	10			
2. 기타시설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5×5m
사료저장고	3평	동	1			10×10m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5. 해상가두리식(농어/돔)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농어/돔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목 재	12cm×15cm×10m	개	240			
부 자	대형 (400ℓ)	개	420			
닻	철제 75kg	개	26			
닻 줄	PP로프 ø40mm	m	1,170			수심 15m 기준
사 육 망	모지망 105경	조	5			
(방오처리망)	무결절 30합 8절	조	40			5×5×3m
	무결절 15합 12절	조	40			5×5×5m
	무결절 12합 18절	조	10			5×5×5m
	무결절 9합 20절	조	10			
부자결착줄	PE로프 ø10mm	m	2,400			
볼트, 낫트	33cm×6부	개	1,440			10×10×7m
2. 기타시설						10×10×7m
작 업 대	10×10m	대	1			
관 리 사	4×6m	동	1			10×10×7m
사료저장고	3평	동	1			
MP 제작기	대형	대	1			
어망세척기	고압	대	1			
3. 인 부						
가두리 제작및 시설	남	명	120			8명×15일 (20조 제작)
어망결착	남	명	20			
계						

6. 축제식(대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대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토목공사>						
1. 방조제						
성 토		㎥	41,800			
돌 붙 임		㎡	3,110			
사 석		㎥	4,400			
줄 떼		㎡	1,584			
콘크리트		㎥	625			
거푸집		㎡	308			
철 근		톤	1.32			
2. 내 방 제						
성 토		㎥	53,922			
콘크리트		㎥	1,544			
거 푸 집		㎡	245			
3. 구조물공사						
취배수문	3×3m	개소	2			
<건축공사>						
1. 사료처리장	블 럭 조	평	50			
2. 사 무 실	블 럭 조	평	30			
3. 관 리 사	벽돌양옥	평	36			
<양성관>						
1. 치 하	체장 2㎝ 내외	미	600,000			ha당 20,000미
2. 사 료	배합사료	kg	150,000			
계						

7. 축제식(꽃게)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꽃게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330g/미	kg	4,000			
사 료	어 분	kg	4,000			
PP 그물망	35×35mm	필	2			
백관(pipe)	ø50mm, 길이 2m	개	200			
철 선	# 8	m	416			
지 지 향	ø12cm, 길이1.8m	개	28			
시 멘 트	40kg	포	15			
선 박	2톤	척	1			
계						

8. 연승수하식(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연	7,000연 이하			(남해군을 제외한 경남은 5,000연 이하)
< 시 설 >						
간 승	18mm	m	2,000			
종 승	16mm	m	300			
닻 줄	20mm	m	2,080			
부 자 묶 음 줄	8mm	m	2,000			
수하연 (코팅사)	3.8mm	연	2,840			
부 자	60ℓ	개	1,016			
	200ℓ	개	4			
닻	ø15cm×4m	개	50			
인 부						
어 장 시 설	남자	명	40			
일 반 인 부	여자	명	30			
(채묘연 조립)	남자	명	4			
(채묘연 수하)	여자	명	16			
계						

9. 투석식(간석지)(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산 석	20㎏	개	100,000			10ha 기준
운 반 비	3톤 (선박)	척	80			
운 반 비	4톤 (차량)	대	300			
시설인부	남 자	명	400			
계						

10. 연승수하식(지중해담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지중해담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부 자	65ℓ	개	1,006			부자 간격 2m 기준
- 표시부자	200ℓ	개	4			
- 부자묶음줄	PP 5㎜	m	2,200~3,500			
- 친 승	PP 16㎜	m	2,000			
- 종 승	PP 16㎜	m	200			
- 말 목	ø15㎝×5m	본	52			친승, 종승 각 4개씩, 사귀 각 3개씩
- 수 하 연	PE rope (120합사)	m	15,000~20,000			
- 폐타이어 (부착기)	15~20㎝	kg	9,375			
* 종 묘						
- 채묘기수 (콜렉타)		개	68,640~80,080			
인 부						
어 장 시 설	남	명	21			
말 목 부 설	남	명	10			
부 자 결 속	남	명	13			
수하연 조립	남	명	14			
수 하 시 설	여	명	90			
계						

11. 연승수하식(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2㎝ 내외	마리	50만~70만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 줄	ø18㎜	m	480			
사 계 줄	ø18㎜	m	480			
작 업 대	12×6m	대	1			수심 20m 기준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4			수심 20m 기준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명	8 20			
계						

12. 연승수하식(새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새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5~2cm	톤	1~1.5			수심 10m 기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8			
닻	60kg	개	8			
닻 줄	ø18mm	m	240			
사 계 줄	ø18mm	m	400			
선 박 (종패운반 및 살포)	2톤	척	3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2			
계						

13. 연승수하식(꼬막)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꼬막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1.5cm	톤	3.5~7			
로 프	ø5mm	m	400			
항 목 (대)	10cm×10cm×6m	개	4			
항 목 (소)	5cm×5cm×2m	개	36			
어장시설 인부	남	명	5			
종패살포 인부	남, 여	명	16			
종패운반 차량	2.5톤 트럭	대	2			
종패살포 선박	2톤	척	4			
계						

14. 연승수하식(바지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15. 살포식(간석지)(동죽)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2.0㎝	톤	3.5~7			각장 1㎝는 20㎏포장 각장 2㎝는 30㎏포장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 길이 1.5m	본	4			
마 대	30㎏들이	장	117~234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3~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20			
계						

16. 살포식(간석지)(가무락조개)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가무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2.0~3.0cm	톤	3.5~7			
항 목 (참나무, 잡목등)	ø5cm, 길이 1.5m	본	4			
마 대	30kg들이	장	150~200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1.5톤 트럭	대	4			
종 패 살 포 선 박	2톤	척	5			
어 장 시 설 인 부	남	명	5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17. 살포식(간석지)(백합)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백합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패	각장 1.0~3.0㎝	톤	1~3			
항 목 (철 근)	ø3㎝, 길이 1.5m	본	80			
럿 셀 망 지	12합 12절	필	2			
상 단 버 팀 줄	ø5㎜	m	400			
하 단 버 팀 줄	ø3㎜	m	400			
결 속 로 프	ø5㎜	m	1,400			각장 1㎝는 20kg포장
마 대	30㎏들이	장	34~100			각장 2㎝는 30kg포장
자재 및 종패운반 차량	2톤 트럭	대	3			
종 패 운 반 (용 선)	2톤 선박	척	2			
어 장 시 설 인 부 (조위망제작인부 포함)	남, 여	명	20			
종 패 살 포 인 부	남, 여	명	10			
계						

18. 연승수하식(진주조개)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진주조개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자 재						
- 간 승	PP ø5～18㎜	m	2,000			
- 닻 줄	PP ø16㎜	m	900			
- 부 자(대)	스티로폴 200ℓ	개	8			
- 부 자(소)	스티로폴 70ℓ	개	402			
- 닻	철재 (20kg)	개	28			
- 부자묶음줄	PP ø9㎜	m	250			
- 포켓네트	70×45㎝	개	2,000			
- 중간채롱	34×34㎝	개	3,960			
- 모패채롱	40×70㎝	개	3,960			
- 알빼기 채롱	30×40㎝	개	3,960			
- 요 양 기	프라스틱제	개	1,000			
- 채롱 수하연	PP ø6㎜ 코팅사	환	20			
- 치 패	각장 5㎝ 이하	마리	23,760			
- 중 간 패	각장 5～8㎝	마리	11,880			
- 모 패	각장 8㎝ 이상	마리	4,851			
- 핵	ø7～8㎜	관	20			
* 인 부						
- 어장시설	선박 (1척×5일)	척	5			
- 인 부	남자 (10명×5일	명	50			
- 시설인부	남자 (2명×6개월) 여자 (10명×6개월)	명 명	12 30			
계						

19. 연승채롱수하식[큰가리비]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큰가리비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층 부 자	PVC ø370mm	개	227			10m간격 1개 시설
사 귀 부 자	스치로폴 200ℓ	개	4			사귀 각 1개 시설
중 층 부 자	PVC ø300mm	개	737			3m간격 1개 시설
사 각 승	PP로프 ø34mm	m	800			200m × 4연
멍 줄	PP로프 ø36mm	m	2,550			75m × 34연
간 승	PP로프 ø32mm	m	1,800			200m × 9연
표 층 부 자 줄	브레이드로프 ø12mm	m	1,386			6m (수하길이 5m + 묶음줄 1m) × 231개
중 층 부 자 줄	PP로프 ø9mm	m	1,106			1.5m (수하길이 1m+ 묶음줄 0.5m) × 737개
지 승	PP로프 ø9mm	m	17,600			1m간격시설(200×11×8)
육성기(채롱)	코팅철사 12단	개	2,200			1m간격 시설 (200×11)
멍	콘크리트 4각 12톤	개	34			간승 11연×2 + 중승4연×2 + 사귀
종 묘 (본양성사)	각장 7cm 내외	개체	343,200			채롱당 156마리 수용
계						

20. 천해투석식(전복)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지주 (콘크리트)	1×1m	개	20			
부 자	100ℓ	개	20			
부 자 연 결 줄	PE ø15mm	m	600			
자 재 운 반 차 량	4톤 트럭	대	1			
종 패	각장 3cm 이상	마리	20,000			
투 석 용 석 재	300kg	개	3,330			
관 리 선	2~5톤	척	1			
시 설 인 부	남	명	4			
용 선	5~10톤	척	1			
살 포 인 부	남	명	2			
계						

21. 천해투석식(소라)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소라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어장표지 시설						* 투석후 해조류 증식에 의한 소라 등 패류자원 번식 조장 (따로 종패 살포를 안함)
부 자	스치로폴 ø30cm	개	8			
표 지 주	ø1cm×1m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로프 ø15mm	m	200			
닻	300kg 석재	개	8			
투 석						
석 재	300kg	개	3,330			
선 박	100톤	척	10			
석재 운반차량	10톤	대	100			
인 부	일반인부 스쿠바다이버	명 명	10 10			
종 묘	각고 1cm	마리	20,000			
계						

22. 건홍식(부류식 망홍)(김)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김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패 각	50개/상자	상자	50			1ha당 20책 기준
망	1.8×40m	책	25			
부 죽	1.8m	개	275			
결 착 사	PP 160합사	환	3			
어 미 밧 줄	PP 12㎜	m	1,000			
부 자	스치로폴 360㎜	개	550			
닻	소나무 1m, ø15㎝	본	26			
관 리 선	1톤급	척	1			
계						

23. 건홍식(부류식 망홍)(미역)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미역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PP ø12㎜	m	3,0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2㎜	m	2,000			
닻 줄	PP 150합사	m	2,000			
부 자 줄	크레모나 18합사	m	500~1,000			
종묘감는줄 (씨 줄)		m	3,000			
부 자	PVC ø18㎝	개	450			
닻	ø15㎝×1m소나무	본	5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4. 연승수하식(톳)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톳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종 묘	5~10cm	kg	300~400			
친 승	PP ø12mm	m	2,000			
닻 줄	PP ø12mm	m	800			
부자줄 및 침자묶음줄	PE ø3mm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ø5mm	m	2,000			
종묘줄친승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결 착						
부 자	ø18mm	개	260			
닻	소나무 1m ø15cm	개	40			
관 리 선	1.5G/T	척	1			
계						

25. 건흥식(부류식)(파래)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파래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망	1.8×40m	책	25			
로 프	ø15mm	m	400			
로 프	ø12mm	m	200			
닻	8관	개	42			수심 7m 기준
닻 줄	ø18mm	m	900			
항 목		본	100			
부 죽 (大)	1.8m	개	275			25책×11개/책
부 죽 (小)		개	300			
부 자	스치로폴(大)	개	44			
P P 사	30합사	관	10			
채 취 선	0.8톤	척	1			
계						

26. 연승수하식(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자 재						
* 부 자						
- 소 형	개량부자 65ℓ	개	660			
- 중 형	스치로폴 200ℓ	개	4			어장표시용
* 로 프						
- 사 각 줄	ø18mm	m	400			
- 닻 줄	ø18mm	m	4,500			
- 연 승 줄	ø18mm	m	1,800			닻 100개×45m
- 허 리 줄	ø18mm	m	100			18줄×100m
- 부자줄 및 부자묶음줄	ø9mm	m	4,000			
- 수하연 묶음줄	ø9mm	m	3,000			
- 천 로 프	ø30mm	m	5,000			
- 종 묘	m당 100미	m	71,000			
- 말치는 장비 (항타기)	-					
- 말 목(닻)	소나무 ø15cm×5m	대	1			
2. 인 부		개	100			
* 어장시설 (말목박기)						
* 연승나르기 및 사각묶기	남자(고용) (자가)	명	3, 1			
* 종묘감기 및 본양성	남자(고용) (자가)	명	2, 1			
* 수하연 육상제작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80, 10			
* 종묘운반	여자(고용),남자(자가)	명	6, 3			8명×10일
* 종묘운반작업대	동력선(자가) 2.5톤	척	2			2명×3일
* 종묘운반 인부	5×8m	대	1			2일×1척
3. 부대시설	남자(고용),남자(자가)	명	2, 2			1명×2일 1명×2일
* 관 리 선		척	1			
* 작 업 대	동력선(자가) 5×8m(자가)	대	1			
계						

27. 축제식(갯지렁이) 표준시설 내역

┌양식품종 : 갯지렁이
└시설기준 : 10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표 지 철 주	ø22㎜×2m	본	4			
철 주	ø16㎜×1.5m	본	140			
세 망	방충망 폭 70㎝	m	4,200			
목 부 자	ø50㎜	개	13,800			
갯 지 렁 이	모 충	kg	400			
버 리 줄	PE rope ø6㎜	m	14,800			
트 와 잉 사	PE rope ø5㎜	m	1,400			
대 부 자	스치로플 ø30×50㎝	개	70			
소 부 자	스치로플 ø30㎝	개	60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5㎜	m	700			
그 물 작 업 인 부	남 자	명	80			
자 재 운 반	4.5톤 트럭	대	1			
시 설 인 부	남 자	명	200			
계						

28. 건홍식(지주망홍) 김과 살포식(간석지) 바지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바지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홍>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바지락살포식>						
종 패	1~2cm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cm(스치로폴)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15mm	m	240			
계						

29. 건홍식(지주망홍) 김과 살포식(간석지) 동죽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김과 동죽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김 지주망홍>						
패 각	50개/상자	상자	40			
망 지	1.8×40m	책	20			
부 죽	30본/속	속	8			
항 목	25~30척	개	420			
매 심 이 줄	PP 160합사	환	4			
관 리 선	1톤급	척	1			
<동죽살포식>						
종 패	1~2cm	kg	5,000			
표시부자연결대	1×1×1m 콘크리트	개	8			
부 자	ø30cm(스치로폴)	개	8			
부 자 연 결 줄	PE rope ø15mm	m	240			
계						

30. 연승수하식 미역과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미역과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미역연승수하식>						
종 묘	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100			
닻 줄	PP ø22㎜	m	360			
부 자 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 리 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줄	PP ø22㎜	m	360			
사 계 줄	PP ø18㎜	m	400			
간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200			
지 승	PP ø9㎜	m	14,300			
종 묘 결 착 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 로 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 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 묘	m당 200미	m	10,725			
계						

31.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우렁쉥이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우렁쉥이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1,500			친승의 1.5배
친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100			
닻 줄	PP ø22㎜	m	360			
부 자 줄	PP 150합사	m	1,430			143연×10대×1m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1,5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50kg	개	12			
관 리 선	1톤	척	1			
<우렁쉥이수하식>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50			
부 자 (중)	PVC ø18㎝	개	160			
닻 줄	PP ø22㎜	m	360			
사 계 줄	PP ø18㎜	m	400			
간 승	PP ø16㎜	m	1,000			
허 리 줄	PP ø16㎜	m	200			
지 승	PP ø9㎜	m	14,300			
종 묘 결 착 줄	PP 스트랑	m	10,725			143연×10대×10m
천 로 프	ø30㎜	m	7,150			
닻	50kg	개	12			
침 자	막걸리병	개	1,430			양성연 5m 기준
종 묘	m당 200미	m	10,725			
계						

32.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mm	m	3,000			
친 승	PP ø22mm	m	2,000			
닻 줄	PP ø22mm	m	720			
부 자 줄	PP 150합사	m	2,86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cm	개	100			
부 자 (중)	PVC ø18cm	개	320			
닻	50kg	개	24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cm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3. 연승수하식 톳과 천해투석식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 묘	5~20mm	kg	300~400			
친 승	PP ø12mm	m	2,000			
닻 줄	PP ø22mm	m	800			
부 자 줄 등	PE ø3mm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5mm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cm	개	40			
부 자 (중)	PVC ø18cm	개	180			
닻	50kg	개	40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종 패	각장 3cm 이상	마리	20,000			
투 석	돌 20kg 이상	개	3,000			
계						

34. 연승수하식 다시마와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다시마와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다시마수하식>						
종 사	유엽5~10㎜	m	3,000			
친 승	PP ø22㎜	m	2,000			
허 리 줄	PP ø22㎜	m	300			
침 자 (돌)	500g	개	820			2.5m당 1개
닻 줄	PP ø22㎜	m	2,100			수심 10m 기준
부 자 줄	PP 150합사	m	840			
씨 줄	크레모나 18합사	관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	개	28			
부 자 (중)	PVC ø18㎝	개	380			
닻	50kg	개	72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 채롱식>						
로 프	ø16㎜	m	880			
침 자	막걸리병	개	220			
채 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간격 10m
계						

35. 연승수하식 톳과 전복 표준시설 내역(복합)

┌양식품종 : 톳과 전복
└시설기준 : 1ha

항 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톳 수하식>						
종 묘	5~20mm	kg	3,00~400			
친 승	PP ø12mm	m	2,000			
닻 줄	PP ø20mm	m	800			
부 자 줄 등	PE ø3mm	m	400			
종 묘 줄	PP 스트링 5mm	m	2,000			
종묘친승결착줄	구라롱사 20합사	m	3,000			
부 자 (대)	스치로폴 ø35cm	개	40			
부 자 (중)	PVC ø18cm	개	180			
닻	철제 50kg	개	40			
관 리 선	1톤	척	1			
<전복투석식>						
로 프	ø16mm	m	880			
침 자	돌	개	220			
채 롱	PVC 다단식	개	220			채롱 간격 10m
계						

Ⅸ. 광 업 권

1. 용 어 정 의

광업권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광업권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이 광업권의 설정대상임

3. 용 어 해 설

1) 광업(鑛業) : 지하에 매몰되었거나 표토층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을 찾아내고 이를 채굴하는 것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選鑛), 제련(製錬) 기타의 사업을 말함

2)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3)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4) 탐광(探鑛) : 광산 · 탄전 등의 개발을 위하여 광상을 발견하고, 그 성질, 상태, 규모 등을 알아내는 작업

5)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 · 선광 · 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6)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7) 제련(製鍊)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 가 표 준 액

○ 광업권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외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70%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가. 정상적으로 생산중에 휴업한 광산과 조업중인 광산으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가채광량포함)

조사가격 =[①(톤당순수입가격×매장량) 또는 ②인근광구의 비준가격 −(③기계 및 시설비+④기계설비이전비)]×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있을 때 : [①−(③+④)]×0.7

○ 가채광량(可採鑛量)을 알 수 없을 때 : [②−(③+④)]×0.7

≪적용요령≫

1)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2)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안 적용
3)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하고 구축물은 전액적용
4) 인근 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 제외
5)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시설 설치비의 10%계상
6)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을 승합

나. 탐광단계에 있으나 광물의 생산량이 없는 광산과 채광 미착수 광산인 경우

조사가격 =[①(광업권 설정비+시설비)+③(매장량×톤당순수입가격) −(④기계 및 시설비+⑤기계설비이전비)]×0.7

≪적용요령≫

1) 광업권설정비 : 등록시 소요경비
2) 시설비 : 시추작업비
3) 인근광구의 비준가격 적용시에는 기계시설비와 그 시설에 대한 이전비를 제외함
4) 톤당 순수입가격=톤당판매가격-생산단가(인건비,채광비,선광비,제련비등)
5) 기계류(차량 및 운반구, 건설기계, 기계장비, 채광시설) : 감가액 감안적용
6) 시설비 : 가건물은 감가액만 감안, 구축물은 전액적용
7) 기계시설이전비 : 기계 및 시설 설치비의 10%계상
8) 확정매장량의 현실화율 70%를 감안하여 0.7%을 승함

X. 회 원 권

1. 정 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을 말한다.

2. 종 류

가. 골프회원권

나. 콘도회원권

다.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라. 승마회원권

3. 시가표준액

붙임 각 회원권의 기준가격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5. 시가표준액

가. 골프회원권

(단위:천원)

시군명	골프장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제천시	힐데스하임	제천시 천남동 산7번지	일반	89,100
			특별	153,000
			주중(개인)	18,000
			주중(가족)	27,000
충주시	임페리얼레이크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84-1	아일랜드	37,800
			일반	25,300
			주중1,2차	12,700
			주중3,4차	12,700
			주중5차	12,700
			주중6차	12,700
			주중7,8차(파인)	12,500
			주중7,8차(트윈)	26,500
			주중9,10,11차	12,800
			주중9,10,11차(트윈)	28,600
			프레지던트	427,000
			슈페리어	54,000
			엠버서더	85,500
	센테리움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산81	창립(일반)1차(분2억8천5백)	236,600
			일반2차(분3억1천5백)	230,000
			일반3차(분3억8천5백)	243,000
			무기명1차(분7억5천)	645,000
			무기명2차(분10억)	710,000
			주중(가족,법인)	55,800
			주중(개인)	41,000

(단위: 천원)

시군명	골프장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충주시	시그너스	충주시 앙성면 중천리 산11-1	일반2,3,4,5차	73,100
			일반9차(분2억)	180,000
			주중10차	19,200
			일반11차	73,200
			일반12,14,15차	73,200
			주중(개인)	19,300
			주중(부부)	31,100
			주중(개인)16,17,18,19	13,900
			주중(부부)16,17,18,19	27,600
			주중 20차	21,700
	스카이뷰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93	기여1차	134,800
			기여2차	134,800
			기여3차	134,800
			기여4차	134,800
			일반1차	38,000
			일반2차(구3천)	38,000
			일반2차(구9백)	38,000
	로얄포레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182	일반2,3,4차(분1억3천)	117,000
			일반2,3,4차(분1억5천)	135,000
			일반2,3,4차(분1억7천)	153,000
			일반 VIP(분3억)	270,000
			일반 WIP(분10억)	950,000
청원군	그랜드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40-1	일반	36,000

(단위:천원)

시군명	골프장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청원군	실크리버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0	일반1차	102,600
			일반2차	108,000
			일반3차	111,600
			일반4차	113,400
			일반5차	119,700
			일반6차	126,900
			일반7차	132,300
			외국인1차	82,000
			외국인2차	108,000
			주중	29,700
			기러기회원권	76,500
			묶음회원권	405,000
	떼제베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산102	일반5차	137,700
			일반4차	81,000
			일반3차	65,250
			일반2차	54,900
			일반1차	49,500
			주중3차	17,100
			주중2차	32,400
			주중1차	26,100
			VIP	379,800
			베스트플러스	24,975
	이븐데일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310-2	일반정회원	59,850
			특별VIP	855,000
			VIP	156,200
			주중	27,000
진천군	중앙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103-1	개인	23,600
			가족	31,900
	천룡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산78-1	정회원	173,000
			주중	28,000

(단위:천원)

시군명	골프장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진천군	ART Valley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산19-15	정회원	55,600
			정회원(골드)	129,000
			평일회원(개인)	16,200
			평일회원(가족)	18,900
			무기명(2차)	758,000
			무기명(1차)	665,000
음성군	레인보우 힐스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4-1	일반(1차)	760,000
			일반(2차)	855,000
			일반(3차)	950,000
			주중(1차)	45,000
			주중(2차)	67,500
	썬밸리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산59-7	특별	1,150,000
			일반	228,000
	젠스필드	음성군 삼성면 용대리 540-1	일반	225,000
			VIP	665,000
			주중(개인)	27,000
			주중(가족)	45,000
	코스카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382	일반(1차)	126,000
			일반(2차)	144,000
			일반(3차)	162,000
			VIP	360,000

나. 콘도미니엄 회원권

(단위:천원)

시군명	콘도명	소재지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면적(㎡)	구좌수	
충주시	충주호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21	76.21	1	20,000
				5	10,000
				10	2,000
			152.43	1	40,000
				5	20,000
				10	4,000
	한화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48-2	87.04(26)	10	4,950
			175.65(26)	10	17,400
	한국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78	85.05(25)	10	2,000
	사조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42-1	66.58(20)	10	1,700
			91.14(27)	10	2,600
	켄싱턴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55-1	53.10(16)	10	1,800
			69.00(21)	10	2,640
			86.00(26)	10	4,030
			116.00(35)	10	6,700
	후렌드리	충주시 호암동 540-2	36.36(11)	18	42,000
			52.89(16)	18	42,000
제천시	ES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 48-6	66.12	10	14,000
			69.42	10	13,000
			82.65	10	13,500
			99.17	10	22,000
			105.79	10	19,000
			142.15	10	30,000
	리솜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산67-10	66.49	12	27,000
			79.51	12	32,600
			94.44	12	38,500
			121.73	10	115,200
			180.55	10	172,800
			241.99	10	277,400
단양군	대명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4-1	40.8	10	12,500
			40.8	12	12,500
			40.8	24	7,500
			59.5	10	22,750
			59.5	12	22,750

다.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단위:천원)

시군명	회사명	소재지	시설명	운영형태	시가표준액
청주시	(주)중원실업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500-3	라마다 휘트니스 센터	개인	2,000
				부부	3,600
				법인 기명2인	3,800

XI. 지하자원

1. 용어정의

지하자원은 땅속에 묻혀있는 광물(돌,석탄,석유,,철,금,은,구리 등) 따위를 채굴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하자원(광물)의 대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거나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광물 중 인류에게 유용하다고 인정되어 법률로 정하여 놓은 광물

3. 용어해설

○ 광산(鑛山) : 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 광상(鑛床) : 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것

○ 채광(採鑛) : 목적 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을 말함

○ 선광(選鑛) : 광석이나 그 밖의 공업원료 광물을 다른 목적광물 또는 무가치한 성분에서 물리적, 기계적 방법 등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과정

○ 제련(製錬) : 채광된 광석 혹은 정광을 녹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하는 과정

4. 시가표준액

○ 지하자원(광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가액이 없을 경우 본표의 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5. 지하자원(광물) 시가표준액

(단위:원)

광물명	품위	단위	시가표준액	비고
석회석	CaO 48% 미만	톤	3,008	
	CaO 53% 미만	〃	7,406	
	CaO 53% 이상	〃	8,300	
	백운석(MgO 21%미만)	〃	6,190	
	백운석(MgO 21%이상)	〃	6,955	
	방해석(전품위)	〃	5,000	
규사	Sio2(전품위)	〃	22,000	
규석	Sio2(미분)	〃	15,000	
	Sio2(입상)	〃	7,000	
고령토	전품위	〃	15,500	
장석	전품위	〃	14,100	
사문석	전품위	〃	5,700	
몰디브덴	MoS2 0.2%/kg	〃	16,600	